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1. 28(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19. 1. 18.
- 회부일 : 2019. 1. 21. (의안번호 : 19 - 9)

2. 폐지이유

본 조례는 마포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함.

4.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지원 재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보조금 결산 시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